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73 발의연월일: 2025. 5. 22.

발 의 자:김재섭·김위상·서천호

최수진 · 김장겸 · 김용태

엄태영 · 조경태 · 서범수

김은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생모로 한정되어 있으며, 생부는 현행법 제5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타인과 혼인 중인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쳐 그마저도 할 수 없음.

이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의 모가 출생신고를 장기간 지체하더라도 혼인 외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혼인 외 출생자가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이 '법적 사각지대'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, 이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생부에 의한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'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'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.

이에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임이 확인된 생부가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출생자의 기본권인 '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'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6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혼인 외 출생자에 관하여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전자검사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혼인 외 출생자와 부자(父子)간의 혈연관계임이 입증된 자(이하 "생부"라 한다)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할 수 있다. 이 경우 생부는 유전자검사 결과서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입증서류를 출생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는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이 없다.
- ⑦ 제44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생부에 의한 출생 신고는 부의 성명·본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(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·출생연월일·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)의 기재를 유 보하고 할 수 있다.
-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절차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생부에 의한 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출생한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신고의무자) ① ~ ④ (생	제46조(신고의무자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혼인 외 출생자에 관하여
	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
	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
	아니한 경우에는 유전자검사
	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객
	관적인 방법으로 혼인 외 출생
	자와 부자(父子)간의 혈연관계
	임이 입증된 자(이하 "생부"라
	한다)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
	할 수 있다. 이 경우 생부는 유
	전자검사 결과서 등 대법원규
	칙으로 정하는 입증서류를 출
	생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⑥ 제5항에 따른 생부에 의한
	출생신고는 제57조제1항에도
	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이 없다.
<u><신 설></u>	⑦ 제44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
	하고 제5항에 따른 생부에 의
	한 출생신고는 부의 성명・본
	・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
	(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

	명・출생연월일・국적 및 외국
	인등록번호)의 기재를 유보하
	<u>고 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
	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
	른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절
	차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
	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
	<u>한다.</u>